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7]

행정(1)부시장 · 행정(1)부지사와 행정(2)부시장 · 행정(2)부지사의 사무분장
(제71조제6항 관련)

해당 시·도	행정(1)부시장 · 행정(1)부지사	행정(2)부시장 · 행정(2)부지사	비 고
서울특별시	기획 · 예산관리, 감사, 비상기획, 행정관리, 보건복지, 산업경제, 문화관광, 환경,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	도시계획 · 건설, 상하수도, 주택 및 소방 · 방재분야 업무	<p>1.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 · 예산 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.</p> <p>2.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(1)부시장과 행정(2)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
경기도	수원시 · 성남시 · 안양시 · 부천시 · 광명시 · 평택시 · 안산시 · 과천시 · 오산시 · 시흥시 · 군포시 · 의왕시 · 하남시 · 용인시 · 이천시 · 안성시 · 김포시 · 여주시 · 화성시 · 광주시 · 양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	의정부시 · 동두천시 · 고양시 · 구리시 · 남양주시 · 파주시 · 양주시 · 연천군 · 포천시 · 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	<p>1.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(1)부지사가 총괄하며, 행정(2)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2.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(1)부지사와 행정(2)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